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 8층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41-9638호

시행일자 2022. 11. 1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657호(2022. 11. 14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2조의2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.

- 다 음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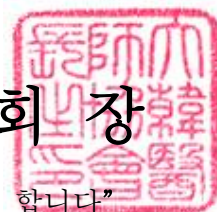
※주요내용

-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
-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관련
- 기타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개정

#붙임 :

- 1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 1부.
- 2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